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0.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0. 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 10. 8

다.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0. 10. 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임 경 선 토목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우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안 제명)

2)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 함 (안 제3조제2항)

3) "도로구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중'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함.(안 별표1의제2호)

4)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일부표현 정비

3. 검토보고 (신승관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제출된 것으로

○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하고

안 별표1의 제2호에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2010년 및 2011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은 따로붙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